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9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0. 24.

발의자 : 이인영 · 강병원 · 강창일

강훈식 · 고용진 · 권미혁

권칠승 · 금태섭 · 기동민

김경협 · 김두관 · 김민기

김병관 · 김병기 · 김병욱

김부겸 · 김상희 · 김성수

김성환 · 김영주 · 김영진

김영춘 · 김영호 · 김정우

김정호 · 김종민 · 김진표

김철민 · 김태년 · 김한정

김해영 · 김현권 · 김현미

남인순 · 노웅래 · 도종환

맹성규 · 민병두 · 민홍철

박경미 · 박광온 · 박범계

박병석 · 박영선 · 박완주

박용진 · 박재호 · 박정

박주민 · 박찬대 · 박홍근

백재현 · 백혜련 · 변재일

서삼석 · 서영교 · 서형수

설훈 · 소병훈 · 송갑석

송기현 · 송영길 · 송옥주

신경민 · 신동근 · 신창현

심기준 · 심재권 · 안규백
안민석 · 안호영 · 어기구
오영훈 · 오제세 · 우상호
우원식 · 원혜영 · 위성곤
유동수 · 유승희 · 유은혜
윤관석 · 윤일규 · 윤준호
윤호중 · 윤후덕 · 이개호
이규희 · 이상민 · 이상현
이석현 · 이용득 · 이원욱
이재정 · 이종걸 · 이철희
이춘석 · 이학영 · 이해찬
이후삼 · 이 훈 · 인재근
임종성 · 전재수 · 전해철
전현희 · 전혜숙 · 정성호
정세균 · 정은혜 · 정재호
정춘숙 · 제윤경 · 조승래
조웅천 · 조정식 · 진선미
진 영 · 최운열 · 최인호
최재성 · 추미애 · 표창원
한정애 · 홍영표 · 홍의락
홍익표 · 황 희 의원
(128인)

제안이유

소재 · 부품 · 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
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

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「국가재정법」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「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을 추가함(안 별표 1 제22호 신설).

참고사항

가. 이 법률안은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76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나. 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. 소재 · 부품 ·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